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도병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천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금천구청과의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이 금천문화재단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 예산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정비(안 제14조제2항)
- 2) 구청장의 금천문화재단 결산서 의회 제출 신설(안 제1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금천문화재단 사무 위탁에 있어 구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재단 결산서를 제출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정비(안 제14조제2항)

- 구청장의 사무 위탁에 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나) 구청장의 금천문화재단 결산서 의회 제출 신설(안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확정권 한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구청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구의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문화재단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봄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금천문화재단의 사무 위탁 및 결산에 관하여 구의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